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의안번호 : 제1280호
- 나. 제 안 자 : 김기덕 의원 (찬성자 10명)
- 다. 제 안 일 : 2023. 10. 09.
- 라. 회 부 일 : 2023. 10. 23.

2. 제안이유

- ‘사회적 고립청년’ 기본계획 수립 시 현 고립청년 실태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자 기본계획에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며,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제1항 제2호)
- 나.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추진을 위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8조)
- 다.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시행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 조항을 규정함 (안 제14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2023. 10. 26. ~ 10. 30.) 결과 : 의견 없음
-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미래청년기획단) : 원안 가결

5. 검토 의견

가.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 사항을 신설하고, 지원정책에 대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하며, 관련 유공자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하여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제1항제2호를 신설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안 제8조를 신설하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이하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4조를 신설하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시행에 공로가 있는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생략) 1. (생략) <u><신설></u> 2. ~ 5. (생략) ② ~ ③ (생략) <u><신설></u>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 3. ~ 6.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u>제8조(위원회의 심의)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u>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

|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 ~ 제12조 (생략) | <p><u>2.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u></p> <p><u>3. 사회적 고립청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u></p> <p><u>4.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u></p> |
| <신설> | <p><u>제9조 ~ 제13조 (현행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u></p> <p><u>제14조(포상)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시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기관·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u></p> |

나. 검토 내용

(1) 기본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 사항의 추가 (안 제5조제1항제2호 신설)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1항제2호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실태조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 ’21.12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실태조사에 관한 조항을 임의규정으로 마련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전국 최초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2.1월 그 결과를 발표¹⁾하였음
- 또한 지난 ’23.9월 제320회 임시회에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고립청년 실태조사 조항을 3년 주기의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²⁾이 가결되어 현재 시행 중임

1) [보도자료] 전국 최초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3월 중 종합지원대책 추진, 2023. 1. 18., 미래청년기획단

2) 의안번호 11-1109, 박영한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같은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11-1070)과 함께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11-1252)으로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따라서 강행규정으로 의무화된 고립청년 실태조사를 기본계획 수립에 다시 한번 포함시키는 것은 정책에 대한 시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객관적인 실태조사 결과에 기반한 정책 추진력 확보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립청년과 그 가족의 경제상태 및 생활양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 개요

- 조사 기간 : 2022. 8. 22 ~ 2022. 9. 23.
- 조사 방법 : 패널조사 및 온라인조사
- 수행 기관 : (주)피엠아이

| 구분 | 가구조사 | 청년 당사자 조사 | 심층조사 |
|-----|---------------------------------------------|---------------------------------------|-------------------------------|
| 표본수 | ○ 총 5,221가구 (청년 6,926명) | ○ 총 5,513명 ※ 고립은둔 지원기관 이용자 160명 포함 | ○ 총 26명 |
| 대 상 | ○ 만19~39세 청년거주 가구 (지역, 가구원 규모, 연령 변수 고려) | ○ 만19~39세 청년 (성별, 연령 변수 고려 추출) | ○ 당사자 16명, 가족 4명, 지원단체 활동가 6명 |

(2) 위원회 심의 및 자문 규정 (안 제8조 신설)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자문을 위해 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기본법」 제14조와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에 의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사·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3)의 취지에 부합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됨

3) 「지방자치법」제130(자문기관의 설치 등)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

「청년기본법」

제14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위원회의 범위 및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심의 조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볼 수 있겠음
- 또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 제5조 제3항에서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고립청년과 그 가족, 관련 전문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것은 그 노력으로 인정할 수 있겠음
- 다만, 현행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은 다소 부족해 보이는 측면이 있어 향후 이를 보완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됨

□ 서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 위원임기 : 2021. 10. 20. ~ 2023. 10. 19. (2년간, 1회 연임가능)

※ 현재 위촉직 위원 임기는 만료되어 신규 위촉을 위한 조사진행 후 2024년 위촉 예정

○ 구성인원 : 19명(당연직 5, 위촉직 14)

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당연직(5) : 서울시장, 미래청년기획단장, 경제일자리기획관, 문화본부장, 주택정책실장
- 위촉직(14): 시의원, 청년정책 전문가, 기업인, 스포츠선수, 대학생 등

| | 위원명 | 주요경력 | 분과 | 비고 |
|----|-----|-----------------------------------|-------|--------|
| 1 | 김영철 | • (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일자리 | |
| 2 | 김용일 | • (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주거 | |
| 3 | 이병도 | • (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복지참여 | |
| 4 | 김만기 | • (현) 퓨처잡 대표이사, 숙명여대 겸임교수 | 일자리 | 공동위원장 |
| 5 | 김수영 | • (현)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교육·문화 | |
| 6 | 유민상 | • (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연구실 연구위원 | 복지참여 | |
| 7 | 김주현 | • (현) (주)에스와이오 경영지원본부 이사 | 일자리 | |
| 8 | 정아영 | • (현) 한국장애인연맹(DPI) 정책위원 | 복지참여 | |
| 9 | 김지선 | • (현)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주거 전문위원회 위원 | 주거 | |
| 10 | 한진석 | • (현)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대학생 | 교육·문화 | |
| 11 | 박유빈 | • (현) 구립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팀장 | 복지참여 | |
| 12 | 유용재 | • (현)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대학원생(석사박사통합과정) | 일자리 | 청년명예시장 |
| 13 | 이다빈 | • (현) 서울시청 태권도부 선수(국가대표) | 주거 | |
| 14 | 김동민 | • (현) 한양대학교 정책과학대학 대학생 | 주거 | |

(3) 포상 규정 (안 제14조 신설)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4조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시행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청년기본법」 제26조에서는 청년 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며, 「청년 기본 조례」 제24조에도 청년 발전에 관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음
- ‘사회적 고립청년’이 새로운 청년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공로가 있는 자를 격려하는 측면에서 포상 규정 신설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며,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청년기본법」

제26조(포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24조(포상) 시장은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 또는 청년발전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다. 종합 의견

- 이번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 시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를 추가하도록 규정한 것은 객관적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추진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는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청년 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추진 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다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4조에서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시행에 공로가 있는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사회문제 해결에 공로가 있는 자를 격려하여 정책 추진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의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으며, 관련 법령과 근거를 살펴보았을 때 개정 내용도 적절하다고 판단됨